

제 603 호

1977.4.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보

차례

◎ 조례

제 1160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	3
제 1161 호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증개정조례.....	3

◎ 규칙

제 1695 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증개정규칙.....	4
제 1696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5

◎ 관리규정

제 5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고처리규정.....	6
------------------------------	---

◎ 고시

제 10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41
제 10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41
제 106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정사)결정및지적승인...	43
제 107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지정변경고시.....	43
제 108 호 서울특별시 1977년도하천토석, 사력 채취로고시.....	4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보도계장	공보계장	기획예산부	문화체육부	고시
1544	具	在	治	文	昌

◎ 공 고

제 78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44

제 80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45

제 81 호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 45

◎ 사 령 4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업용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선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4일
1977년 4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61호
◎ 서울특별시조례제 1160호	서울특별시공업용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업용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4호 다음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의 별표 제 2호 및 제 7조의 별표 제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3조 (위원회)	
15.운동장전설분과위원회	
제 4조제 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제 4조 (구성) "다만 운동장전설분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인이내로 구성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7-4 제 603 호

시 7월 14일 1977.4.14

<별표제 2호>

공업용수 사용료율표

구 分	사 용 요 금
기본요금	신청량 전부에 대하여 1회당 7원
초과요금	신청량 초과분에 대하여 1회당 20원

<별표제 3호>

급수관손료

구 경 별	요 금	구 경 별	요 금
13 %	1전 1개월 150원	150 %	1전 1개월 4,000 원
20 "	300원	200 "	5,600 원
25 "	400원	250 "	6,900 원
40 "	600원	300 "	8,200 원
50 "	1,200원	400 "	11,200 원
75 "	2,400원	500 "	15,300 원
100 "	2,800원		

규 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7년 4월 1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5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전과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실과명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입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기전과	1. 전기사용량 확인, 요금지불 및 수급계약 2. 상수도사업용 자동차유지관리 가. 신규차량구입 및 등록 나. 노후차량대차, 폐차	내부위임	수원지사무소장 배수지사무소장 수도관리사업소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에 관한 규정 제20조
부 칙		제 3조 (위원회 및 본과위원회의 주관부서) (1) 종합운동장 건설본부장은 운동장 건설본과위원회를 주관한다.		
이 규칙은 197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4조 (운동장건설본과위원회) (1) 운동장건설본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축설계 및 공사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3. 신축자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본과위원회의 직무를 신속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1977년 4월 1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6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증 개정 규칙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14 항다음에 1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어 운영 할수 있다.

③간사는 관리과장, 서기는 관리계
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전사고 처리규
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수사업 관리규정제 54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사고처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이하 "지하철"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
에 대한 관계처의 보고 및 사고
원인분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철운전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하
철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의 보고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대사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가. 제 4조 1호 내지 3호에 해당
하는 사고

나. 전호 이외의 사고로서 5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다. 사고의 원인이 특히 증대한것

2. "사망자"라 함은 즉사자 및
부상후 그 부상에 기인하여 24시
간내에 사망한자를 말한다.

3. "부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할 정도의 상해를 받은자를
말하며 3주간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것을 "중상" 3주미만을
"경상"으로 말한다.

다만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은 중상으로 한다.

4. "작업원"이라 함은 위탁 및
대행업무 종사원도급 및 직영공사

작업원, 구내영업종사원, 실습생등으로서 지하철의 구역내 또는 차량에서 지하철의 수송 또는 공사등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10. "사고조치"로 한는 사고의 원인인 불안전한 행위 또는 조치를 구성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는 합리적인 대체로 수립되는 일련의 사고자 지속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책임사고"라 함은 직원의 취급과오, 직무태만, 시설장비등의 점검 및 보수소홀로 발생한 운전사고, 운전저해 및 사상을 말한다.	11. "기타" 지하철 조치를 제 3조에 정한 규정과 규칙과 규정에 적용된다.
6. "사고원인"이라 함은 직접사고를 야기시킨 불안전한 행위 또는 불안전한 조정을 말한다.	제 4조(운전사고의 종류) 운전사고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중 사망자 사상 또는 물건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충돌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소인"이라 함은 사고원인을 완성 조장한 근본요소를 말한다.	1. 열차충돌
8. 원인"이라 함은 사고원인에 관련이 있는 타동적조정, 작업조정 및 설비조정등을 말하며 사고원인과 관련사항 및 영향에 따라 소인과 구별한다.	열차가 다른 열차 및 차량 또는 노선의 작업기계류(도하차, 그물차, 보선작업차등)와 충돌하거나 조작축하였을때.
9. "사고분석"이라 함은 운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시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열차탈선 운전중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였을 때
	3. 열차화재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4. 사상

<p>관계직원의 취급과오로 인명의 사상을 발생케 한 때 또는 본인 및 관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접촉하여 인명에 사상을 발생케 한 때 다만, 치료를 요치 않는 것을 제외 한다.</p>	<p>다. 차량고장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에 영향을 미쳤을 때 (차량파손 및 화재로 인한 것도 포함)</p>
<p>5. 기타 전 자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로서 사고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때</p>	<p>라. 열차분리 열차운전중 분리되었을 때</p>
<p>제 5 조 (운전개해의 종별)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저해를 미치게 한 것 중 제 4 조에 규정한 운전사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종별은 다음 자호와 같다.</p>	<p>마. 열차퇴행 열차 또는 선로 및 전차선의 고장, 천후불량으로 후방 정거장방면으로 퇴행하였을 때</p>
<p>1. 부내원인</p>	<p>바. 차량일주 열차 또는 차량이 본선 또는 측선에서 본선으로 일주 하였을 때</p>
<p>가. 차량충돌 차량상호충돌 및 접촉 또는 차량이 동에 충돌하였을 때 (모타카 및 트로리 포함)</p>	<p>사. 전철 장치고장 전철기 고장으로 발생하였을 때</p>
<p>나. 차량탈선 차량이 선로를 이탈하였을 때</p>	<p>아. 신호장치 고장 신호기 C.T.C 조작반 궤도 회로 단락 등으로 발생한 것</p>
	<p>자. 선로고장 선로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발생한 것</p>

차. 전차선 고장	너. 기타
전차선로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	전 작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카. 송전고장	2. 부의원인
급전설비, 신호용 배전설비의 고장 또는 파손 및 정전전압 강하 등으로 소정의 송전 불능으로 발생한 것	가. 열차방해
타. 열차지연	고의로 선로, 차량, 신호 기관 열차운전에 관계 있는 시설을 손상을 가하거나 열차의 운전, 승객 등에 위험을 가하였거나 또는 저해의 우려가 있어 운행을 정지하였을 때
직원의 출무지연, 작업지연 또는 작업의 파오, 미숙등으로 경거장에서 5분, 1회색구간에서 5분 이상 열차가 지연하였을 때	나. 선로지장
파. 이선진입	선로내 및 경널목에 물건의 방치, 사람 또는 차량, 우마차, 동물 등의 침입으로 열차가 정지하였을 때
열차가 진입할 정당선로 이외의 선로에 진입하였을 때	다. 송전장애
하. 폐색취급 위반	외의부 송배전 시설의 고장, 파손 또는 정전등으로 정구의 수전이 않될 때
폐색취급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발생하였을 때	라. 보안장치 장애
거. 신호취급 위반	운전 보안장치의 파손으로 전차
신호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전철기 취급도 포함)	

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때 차량.	을 때
우마차의 충돌, 전주, 수목등의 전 도로, 신호기 표지경널목 경보장 치, 궤도화로등이 손상되었을 때	마. 기 타
마. 기 타	전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에 의하여 발생된 것	제 6 조 (사상의 종별) 사상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의하여 인명의 사상 이 발생한 것 중 제 4 조 및 제 5 조의 운전사고 또는 운전저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종별은 다음각호 와 같다.
3. 재해원인	1. 승하차사상
가. 차량재해	승하차할 때에 발생한 사상 예컨대 승하차시 다른 승객에게 밀리어 넘어졌거나 차량과 승강장 사이로 추락하였거나 출입문에 끼 여서 부상을 입은 것 등으로 발생한 것.
풍수해, 설해 등으로 차량의 탈선,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2. 타동적 사상
나. 선로재해	타동적 조건에 의하여 사상이 발생 하였을 때
풍수해, 설해 등으로 선로 및 전차선의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예컨대 창유리의 파손, 물건의 전 락 등으로 발생한 것
다. 운전재해	
풍수해, 설해 등으로 급전설비 또 는 신호용 배전설비에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라. 보안장치 재해	
풍수해 설해 등으로 운전보안장치 의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	

3. 직무사상	전기사또는 차장
총사원이 운전업무 수행중 사상 이 발생한 것	3. 전 각호 이외의 장소에서 생한사고 - 발견자
예컨대 차량 입환중 전락, 해결 작업 및 전철기 취급중 발생한 것	②본조중 본부장에게 급보는 운수과 (운전사령)를 경유하고 최대한 속 히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발생후 30분이내에 본부장에게 도달케 하여 야 한다.
4. 기타사상	③본조 급보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함을 원칙으로하여 응급시에는 면 제 구두 또는 전화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항으로 사상이 발생한 것 제 7조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종별의 결정)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으로 그 이상의 종별에 해당 하는 경우 및 병발하여 발생한 때에는 최상위의 사고종별로 취급 한다.	④운수과장은 별지제8호내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사고처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8조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의 급보) ①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해당자 (이하 "급보책임자"라 한다)는 지 하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관계역 소장 및 관할경찰서에 급보 하여야 한다.	제 9조 (감독기관에의 속보) ①본조의 급보를 받은 본부장은 즉시 사고 의 개요 조사한후 별표1의 기 준에 의하여 시장 및 교통부장관 에게 속보하여야 한다. 본 속보는 사고발생후 1시간 이 내에 하여야 한다.
1. 정차장내에서 발생한사고 - 역장 2. 정차장외에서 발생한 사고 - 운	②사고 관련차량 또는 총사원이 철도청 소속일때는 전항의 기준에 의하여 철도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7-12 제 603 호

사 보

1977.4.14

<p>③ 전 1 항의 속보는 사고복구 및 처리의 전전에 따라 그 개요를 시시로 추보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급보사항) ① 급보책임자로써 급보를 요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즉시 판명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종별 2. 열차번호 3. 발생시분 또는 발견시분, 천후 4. 발생장소 (선명, 구간, 기점, 현부근 선로의 상황, 구배의 유무, 폭선등) 5. 현성 (현성번호, 현성차수등) 6. 관계자 직, 성명 (책임사고에는 채용 및 현직임명, 년월일, 년령) 7. 원인 (정확한 원인불명일 때는 추정에 의함) 8. 손해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 등의 손상상태등) 9. 승객 (대략적 인원수 및 전도의 연락관계) 	<p>10. 사상 (국적, 남여, 사망, 중, 경상별, 인원수, 주소, 성명, 년령, 직업등)</p> <p>11. 사고의 상태 및 운전개황 (차량탈선 또는 전복기타의 상황, 운전방법, 속도등)</p> <p>12. 본선 불통에 대한 수송조치</p> <p>13. 사고의 조치 및 복구예정 (본선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개통 예정일자)</p> <p>14. 구원을 요할 때는 그 요지</p> <p>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사고에 관한 급보로써 전화에 의할 경우에는 사령전화기에 의하여야 한다.</p> <p>다만, 사령전화기의 설치가 없을 경우 또는 이에 의할 수 없을 때는 타전화기 또는 열차무선 전화기를 사용한다.</p>
--	---

<p>제 11 조 (상호협조) 사고의 원인 조사와 복구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관계자는 상호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를 기피하거나 증거물의 인멸, 체손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전 각호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관세소속장</p>
<p>제 12 조 (사고보고서의 제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책임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사고보고서 2통을 (철도청 관내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3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운수과장경유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고장보고서의 제출) 고장 및 운전저해의 발생사고에 있어서 차량, 선로, 전차선, 전력시설, 보안장치, 통설장치 등의 시설 대상자의 교장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는 관세소속장은 고장보고서 부본 1통을 수반과 장경유 운수과장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서말서와 신상조사서 (별지 제 7 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다만 사고원인 및 피해액 조사에 특이성이 있을때는 이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p>
<p>1. 정차장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 역장 및 운전기사 또는 차장의 소속장 2. 정차장 외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 운전기사 또는 차장의 소속장</p>	<p>제 14 조 (보고서의 처리) (1) 운수과장은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의한 사고보고서 및 고장보고서를 관계책임자로부터 접수하였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여 별지 제 3 호 서식의 운전사고 (운전저해 또는 사상) 조서와 별지 제 5 호 서식의 조사</p>

<p>의견서 및 별지 제 4호 서식의 진술조서(사고판계자)를 작성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전항의 조사결과 판계직원의 과 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운전사고 (유전저해 또는 사상) 불문조서를 작성 처리한다.</p> <p>(3) 운수과장은 별지 제 12호 서식의 운전사고 발생월보 및 별지 제 13 호 대지 제 16호 서식의 운전사고 분석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이내 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4) (사고원인조사) 사고발생의 원인이 복합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지명의 요원으로서 조사반을 구성하여 원인조사를 하여야 한다.</p> <p>가. 원인조사요원</p> <p>운전계장, 운전사고주무, 보선계 장, 전력계장, 신호계장, 전차계장 (또는 검수계장)</p> <p>나. 전항의 조사반 구성에 있어서</p>	<p>운전계장, 운전사고주무를 제외한 사고발생 원인에 관계없는 해당 분야의 요원은 제외될 수 있다. 다. 전 1항의 원인조사반은 기술담당 관의 지휘를 받아 운전계장이 통솔하여 종합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5조 (원인불명시의 판단자료조사) 열차탈선 등으로 그 원인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 여 판단자료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발생시분 및 해당열차의 정 차장 출발 또는 통과시분 2. 중거리를 및 그 산재위치(산재위 치를 약도에 기재) 3. 탈선 차량후행지 승강시점 및 통과흔적 4. 선로판계 <p>가. 궤도에 관한 일반사항</p> <p>수령(탈선지점 전후 40미터 에 걸쳐 조사할것. 다만 그 이상이 필요있을 경우에는 그 구역내) 방향(상동), 궤간(상동) 교도 및 광도(상동) 궤간방향의</p>
--	--

불균형 (상동)	
나. 펜조 및 이음매부 마모 및 부식의 정도 마모 단면적 및 형상 내부홈 또는 균열, 절손상태 유간 및 복진의 정도 기타의 이상변형	강압량 S.A.P 관 압력 또는 제동법 각도
다. 개못 및 체결구 부상정도, 휘손, 굴곡 (형상도, 부식등의 유무) «크릴»의 이완 휘손정도, 장력의 감소	나. 속도 및 정지거리 당시의 속도 탈선지점에서 정지지점까지의 거리
라. 칠목의 부식상태, 절손, 파열의 정도 및 비율	6. 차량관계
마. 도상 및 로반 도상의 종류 및 그량 로반의 양부, 배수상태 «체킹»의 규격 및 삽입부의 양부 동상의 유무 및 상태	제동장치기능 (제동관압력, 유하주 장치의 조정치, 피스톤 행정 등) 제동장치 각부의 파손, 날출한 것의 유무 및 그 낙하위치 «사이드 베이링»의 부단 하중 조성상태 차량 «후란지»의 마모상태 «수레» «높이» 및 레벨, 담여, 마모상태와 차륜내벽거리 상대 차륜의 치경차. 대차부 각스프링의 높이 및 세약 정도, 절손유무 대차부 각스프링 조정부의 상태 및 조정치 «엔타페보트» 라이나 및 조정판의 상태 «스윙클스타» 부의 슬동판 상태 및 간격 축상베이링 및 치차판의 상태 (고착시)
바. 기타 복수장치 (예: 레일앵카, 다이프 레이트등)의 상태 평소 펜도 보수의 난이	
5. 운전관계	
가. 열차조종의 개폐지점 주간제어기, 제동기, 사용지점, 상용, 비상, 제동의 구별, 제동관	

47-16 제 603 호

시

보

1977. 4. 14

방진고무의 상태 오일탐파 및 스윙항가동의 상태 주행장치부의 평소 보수상의 문제개소 전회의 정기검사 년 월 일	제 16 조 (계승역에서의 고장보고) 계 승역에서 발생한 계승전차의 파손 또는 고장으로 그 원인이 승무원 교대전에 있을 때에는 도착 전차 의 소속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7. 참고사항 가. 기왕의 선로사고 및 차량사고 나. 전 열차현장을 운전할 때의 이 상 각지의 유무 다. 현장의 특이성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급 보 구 분 표

분류	사고구분	내용 및 급보부	내용	급보처	
				시장	교통부장관
운전사고		열차충돌	전 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열차탈선	전 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열차화재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1시간이상 열차에 열화가 있는것 3. 원인이 악질적인것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상사고	사상사고	1. 공무집행중의 종사원에게 발생한것 2. 일시에 5인이상 사상자를 발생한것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내용 및 금 보처	내 용	급 보 처
				시 장 고 통부 장 관
운 전 체 계 의 체 인	부	차량 충돌	1. 본선을 지장한것 2. 사상자를 발생한것 3. 차량의 손상정도 심한것	○ ○ ○
		차량 고장	1. 기기파손, 차축절손, 외풀이와 탈선등 중요한것	○
		선로 고장 전차선고장 수전 고장	1. 개통에 1시간이상을 요한다고 인정하는것. 2. 열차에 1시간이상 영향이 있는것.	○ ○
	인	이 선 진입	1. 차량충돌, 탈선등 중대사고 야기한것.	○
		폐쇄 쟁금	2. 원인이 심히 악질적인것	○
		위반	3.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	○
	부	열차 방해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열차운행에 대대한 지장이 있는것 3. 범인이나 사상 즉시 수배를 요하는것	○ ○
		선로 지장	1. 자동차와 충돌한것 2. 사상자를 발생한것 3. 열차에 1시간 이상 영향이 있는것 4. 열차운전을 흥지 및 만류 운전하는것	○ ○
		송전 장애 보안장치장애	1. 복구에 1시간 이상을 요함에	○ ○
	체 의 체 인	차량 재행	1. 사상자를 발생한것 2. 1시간이상 열차에 영향이 있는것 3. 원인이 악질적인것	○ ○
		선로 재해 송전 재해 보안장치재해	1. 개통에 1시간 이상을 요한것	○ ○ ○

47-18 제603호

시

보

1977. 4. 14

본부장	운영담당관	건설과장	운수과장				
	기술담당관	공무과장	운수제장				
<제 1호서식>		전기과장	운전제장				
		전차과장					
운전사고통보							
사고종별		수보시각	년 월 일 시 분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일기				
발생장소	선 역 간 역	기점	K m 구배	곡선			
열차	제	열차	편성량	량	편성번호	제 호	
판	직명	성명	연령	현직발령년월일	직명	연령	현직발령년월일
제							
자							
개황							
송신자				수신자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0 g / cm² 단면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17

<제 3호서식>

불^유기^호
수^진
참^조

운전사 고조 서 시행년월일

발신

(6)

기 암자	결재									
협조										
사고종별			판계열차	제	열차 이한					
발생시일	년	월	일	분	발생장소	기점	선	터키로	간	미터
상	소속	직	명	등	성	명	저문정도			
별										
<u>내용</u>										
(190 mm × 268 mm) 선운봉지 508/ 박영 208/										

47-20 제 603 호

시

보

1977.4.14

<제 2 호서식>

분류기호

수 심
참 조운 전 사 고 보 고 서

사고종별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요일) 친후							
발생장소	선로상태	역 구배	연간 상하	지점 폭선	지점 좌우			
	교량면	... 수도명	... 선전별	목명칭	종별			
열차및편성	제	열차	기	본부 보조	호	현차	량	환산량
관 계 자	소속	직종	직명	성명	년령	학력	근속년수	해직년수

사고개황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21

발신

(4)

피	임 회 대		피해자신원
해	화 시 설		

발생상태 (현장악도록)

조치 (사고 복구 관계등)

사고원인

가:

나:

책임유 소재

문제점

소속장 의견

보고자 작성자 년 월 일 직명 성명 (4)

소속장 확인 년 월 일 직명 성명 (5)

380 × 268 = (박영자 70g / m²)

47-22 제 603 호

시

보

1977.4.14

<제 4 호서식(1)>

운전사고진술조사서(1)

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제	열차
사고에 대한 관련자 진술 조사서				
관계자	소속			
직종	직명	성명	연령	
상기 사고에 대하여		년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다.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박엽지 20g/

<제 4 호서식(2)>

운전사고진술조사서(2)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
박엽지 20g/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23

<제 4호서식(3)>

운전사고 진술조서(3)

위의 진술한 것을 열람하였든바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
하고 서명 날인함.

19 년 월 일

진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번 호

조사자 직위 성명 ☺

(190 mm × 268 mm) 신분증지 50g/장
박영지 20g/장

<제 5호서식>

운전사고 조사 의결서

190mm × 268mm 갑을형 3면지
각 용지 박영지 19g/장 (2면)
별 신분증지 50g/장

47-24 제 603 호

보 1977.4.14

<제 6호서식>

운전사고불문조서

계	운전제장	운수과장	기술담당관	운영담당관	본부장

사고종별	원인	
발생일시	월 일 분 천후 수도 교량 구배 상 하 곡선 좌우	
발생장소	선 역 간 기점 키로 미터부근	
열차 제	열차 평성량	평성번호 제 호
관 제 자	조명 성명 년령학력 현직발령 직명	성명 년령학력 현직발령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조사사항

190 ■ × 26.8 ■ 강울병 3계
 강 울 박연지 19g / kg
 병 신운용지 50 g / kg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25

<제 7호서식>

운전사 고과 제자신 상조사서

소 속②	직종②	직경③
주민등록번호④	성명⑤	생년월일⑥
학 턱⑦	체중⑧	체적체중⑨
본 적⑩		
현 주 소⑪		
가정환경⑫		
근무폐도⑬	기준	상벌관제⑭
직책관념⑮	평점	
교우대인관계⑯	100 점	
세 정⑰	기준	직장경력⑲
교양성적⑲	평점	
실무성적⑳	100 점	
개	장점⑳	
	단점⑳	
성	특기⑳	
사되는 고참와 불사면 향	본인의작업 전후 동태 ㉓	
	작업변경유무 및 주의사항 ㉔	
	작업 유무 및 사항 ㉕	
	가정실태 (사고관련사항) ㉖	
수	사고요인 사전체거 ㉗	
장	사고의요인 및 소인 ㉘	
의	사고처리에 대한견의 ㉙	
결	본인의 요망 사항 ㉚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1977.3. . . 소속장		인
100 × 2.68 = 모조 70.8 / 단면		

47-26 제 603 호

시 보

1977.4.14

<제 8 호 서식>

운전사 고조사 표

소속 장

월 일			
통보자 및 발생시각	제 --- 열차 직명 시 분 발생 성명		
발 지 장 의 유 무	유 무	지장상태	긴급정지수배 인접정차장에 통보
장소상황		역 역간	K M 단절
사상자의 유무	사자 <small>여객 공동 직원</small>	상자 <small>여객 공동 직원</small>	명명 구호수배
충돌 또는 탈선상태	T C M M	차 차 차	
선로상태 가선	(선도로) 침몰	(가단선) 단주선하	
구원의료부	부부	부근목표 소속 운전사	
지장율	페-스 추력	우마차 택시 기타	자가용 관용
경보기 작용의 유무	유부	전널목간수 주소 성명	
전널목에서 일단정차의이행	일단정차이행 일단정차불이행		
현장화재연락	사용전화 회선명 공중전화	승무원용 무선기	
기타	현 화 환산	랑 랑	TC. M. 'M' 전차구소
적요	1. 조사중 긴급수배 사항		

190mm x 268mm 모조 70g / 단면

<제 9호서식>

부 부 사 교 복 구 확 인 표

번호	항 목	내 용	연 락 사 항			번호	항 목	내 용	연 락 사 항		
			상 대 자	시 분	기 사				상 대 자	시 분	기 사
1	복 구 예 침	복구예정시작									
2	복구작업현황 표 작성	현지 대책본부장과 복구작업 현황표를 작성한다. 예 			작업관리 담당자를 지정						
3	복 구 학 수	작반의 작업불감 및 순서 명령				4	기증기도착까지 의 준비작업	⑥ 복구작업장의 정비 ⑦ 전차선의 타설, 절단 ⑧ 전차의 절단, 해체 ⑨ 선로보수	복 구 예정시각의 보고		
						5	교대자 수배	복구시간이 장시간을 요할때 교대자수배 및 휴양장소설치	제 1회	시	분
						6	외부능력의 활용	구행, 복구용 기관차, 기술자 공장관계요원을 요청수배	제 2회	▪	▪
									제 3회	▪	▪
									제 4회	▪	▪
									제 5회	▪	▪
									제 6회	▪	▪
									제 7회	▪	▪
									제 8회	▪	▪
									제 9회	▪	▪
									제 10회	▪	▪
									대책본부에 예시보고		

380 mm x 258 mm 모조 709 / 1면

<제 10 호 사직>

속 보 사 항								속 보 자
	시 간	소 속	성 명					
사 상	총 병	방 융	공 중	직 원	기 타	제 명	수 봉 장 소	
	사 망	명	명	명	명	명		
	중 상	"	"	"	"	"		
	경 상	"	"	"	"	"		
	제	"	"	"	"	"		
달 선 상 황	차 종	진 행 방 향	달 선	경 사	전 부	달 선 거 리	지	령
	T C		량	량	량	cm		
	M		"	"	"	"		
	'M		"	"	"	"		
	M		"	"	"	"		
	'M		"	"	"	"		
	M		"	"	"	"		
	'M		"	"	"	"		
	T C		"	"	"	"		
	제		"	"	"	"		
전 도 송 제 인 원	단체권	명	지정권	명				
단체권 지정원	주 소							
운전자 (가해자)	성 명		근무처					
선로피해상황	품 명	종 별		수 량				
	페 일 경 환							
	침 둑 생 환							
	체 결 장 치							
	기 타							
선로지장상황	하 행 지 장		상행지장	기타				
	가 선 전 주 피 해	절 손	본 경 사	본				
	전 선 단 선 개 속	조 가 선	도로라 선					
	전 범 목 주 의 표 식	절 손	본					
	인 접 신 정 전 여 부	여	부					
	전 범 목 경 보 기							
	자 동 차 단 기							
	용 접							
	기 타							
통 신 설 비 황	봉 신 접 연							
	깨 - 불							
	T B							
	기 타							
통신 회 선	운 전							
	사 형							
	제 어							
	전 신 중 제							
	화 도 병 을							
	복 구 완 시 간							
	간							

300mm x 60mm 5.5mm

<제 11호서식>

운전사고 피해액 내역

(월별)

구분 상고 종별	발생 일시	장소 및 차	원인 합계	인명		차량		선로		기타시설물		응급복구비		기타		
				사상 인	상상 인	금액	도랑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풀명	수량	금액	풀명	수량	금액

380 mm × 268 mm 모조 70g / 단면

47-30

제 603 호

시

보

1977. 8. 14

<제 12 호서식>

운 전 사 고 월 보
(197 년 월순보)

일련 번호	사고종별	발생일시	장소	열차번호	기번 및 소속	여성	사고원인	원인	개황	처리

1561

제 603

1977.4.14

47-31

제 13 호 서

사상사고원인

<제 13 호 서식>

사상사고원인 분석표 (년 월분)

원인 및 연령별	원												인												별												중											
	여객						공						전널목 차량 및 횡단						전널목 차량 및 횡단						전널목 차량 및 횡단						전널목 차량 및 횡단						전널목 차량 및 횡단											
합	비	비	열차	선로	자	홈	반대	축하	터	열차	열차	나	전조	차량	기	선로	선로	자	비	비	열차	충돌	차량	구내	선로	교	수도	교	수도	전널목 차량 및 횡단																		
남녀 사상별	제	승	강	행	살	차	식	들	선	격	돌	나	석	파	기	선로	선로	자	비	비	열차	충돌	차량	구내	선로	교	수도	교	수도	전널목 차량 및 횡단																		
제	승	강	행	살	차	식	들	선	격	돌	나	석	파	기	선로	선로	자	비	비	열차	충돌	차량	구내	선로	교	수도	교	수도	전널목 차량 및 횡단																			
합계																																																
사망																																																
제 중상																																																
경상																																																
사망																																																
중상																																																
경상																																																
사망																																																
중상																																																
경상																																																
사망																																																
중상																																																
경상																																																

	원인(직무증)												년령별												비고				
	직	원	인	직	무	증	업	원	연	령	별	직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원인 및 연령별	비	비	열	선	임	열	열	차	전	비	기	기	열	선	차	기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남녀 사상별	차	에	로	환	작	차	차	차	별	승	승	타	차	로	차	타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에서	수	횡	업	중	업	중	차	목	비	기	기	차	에	차	타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승	강	락	단	중	돌	선	축	에서	승	타	작	차	에서	차	타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합계																													
사망																													
재증상																													
경상																													
사망																													
증상																													
경상																													
사망																													
증상																													
경상																													

<제 14 호 서식>

종별원인 분석표(년월분)

요인별 구분		합계	총 사원 취급 상주의																		부과 관리 소											
사고구분	사고원인별		보험장치점	전철취급	전도증전	전화출입	전불일자	입전호불량	유치차량	입작업불량	입타할소통	진업선환	지장일	차량접속	한계유지	무취자격자금	가수	열불차감시량	불건기초	운불건이행	간수질무량	소재	무구자격자전	제불동취금량	신호오전	신소호확인률	제초활속도과	제작동인기능률	열불차감시량	무동유도전	입불화업량	차소량점화
사고구분류	사고종별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운전사고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부내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제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부의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제해원인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사상	
	총계																															

<제 15 서식>

사고책임소재 분석표(년 월 분)

사고분류	장별 년령 근속년수 처벌안정별 임사고수	책임인원	역						승무 관리 소						차량 공작소						공무소									
			역	조	지	신호	구내	역무	기타	주임	조	지지도	운전기사	기타	조	검수	점수	난방	조기	조기	조기	조기	기술	기술	기기	선로	영선	조간	기계	
사고구분	사고종별	사고수	장	여	도	원	원	원	원	원	우전사	운전사	타	예	장	원	원	원	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우전사고	열차 충돌																													
	열차 탑선																													
	열차화재																													
	사상사고																													
	기타																													
	제																													
부온내전원인저	차량 충돌																													
	차량 탑선																													
	차량 고장																													
	열차 분리																													
	열차 뇌행																													
	차량 일주																													
	전철기고장																													
	신호장치고장																													
	선로고장																													
	전차선고장																													
	종거고장																													
	신호취급위반																													
	열차지연																													
	이서지연																													
	폐색취급위반																													
	기타																													
부외원인해재원인	열차방해																													
	선로지장																													
	승선장																													
	보안장치장애																													
	기타																													
	차량재해																													
	선로재해																													
	승선재해																													
	보안장치재해																													
	기타																													
사상	술하차사상																													
	타동적사상																													
	직무사상																													
	기타사상																													
	제																													
총계																														

사고구분	장명별 년령, 근속년수 취법양정별										시										보										정		이처	
	년	령	별	근	속	수	별	처	법	양	정	경	이	발	전	비					불 표 창 상 체	문 정 상 참 작	의 원 면 적	미 경 찰 제 류 결	제	송 수	고							
	二 五 세 미 만	三 〇 세 미 만	四 五 세 미 만	四 五 세 미 만	五 〇 세 미 만	六 개 월 미 만	一 년 미 만	二 년 미 만	三 년 미 만	五 년 미 만	一〇 년 미 만	一 六年 이 상	파	6	5	4	3	2	1	전	불 표 창 상 체	문 정 상 참 작	의 원 면 적	미 경 찰 제 류 결	제	송 수	고							
사고종별	二 五 세 미 만	三 〇 세 미 만	四 五 세 미 만	四 五 세 미 만	五 〇 세 미 만	六 개 월 미 만	一 년 미 만	二 년 미 만	三 년 미 만	五 년 미 만	一〇 년 미 만	一 六年 이 상	파	6	5	4	3	2	1	전	불 표 창 상 체	문 정 상 참 작	의 원 면 적	미 경 찰 제 류 결	제	송 수	고							
운전사고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사상사고 기계																																	
운전부내전원인자	차량충돌 차량탈선 차량고장 열차분리 열차회행 차량일주 전철기고장 진호장치고장 선로고장 전차선고장 전중전고장 진호취급위반 열차지연 이선지연 폐색취급위반 기타																																	
부의원인해원인	열차방해 선로지장 증진장애 보안장치장애 기타																																	
재해원인	차량재해 선로재해 송전재해 보안장치재해 기타																																	
사상	승하차사상 타동적사상 침투사상 기타사상 계																																	
총	계																																	

(제 16호 서식)
운전사고부식보고서

1. 충팔표(년월분)

사고부류구분	구분	사고전수	책임사고	취급주의	차량	시전기	타동조전	계	요일	시간별							일기	열차총별								
										054	458	8512	12516	16520	20524	계	맑음	흐림	비	눈	농무	폭풍	계	급행	보행	공사
운전사고	사고종별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사상사고																								
		기타																								
부	차량충돌																									
운	차량탈선																									
내	차량고장																									
전	열차운리																									
원	열차퇴행																									
인	차량일주																									
	전철기고장																									
	신호장치고장																									
	선로고장																									
	전차선고장																									
	송진고장																									
	열차지연																									
	이전지연																									
	폐색회금위반																									
	신호회금위반																									
	기타																									
부	열차방해																									
의	선로지장																									
원	송진장애																									
인	보안장치장애																									
	기타																									
해	차량재해																									
재	선로재해																									
래	송전재해																									
원	보안장치재해																									
	기타																									
	계																									
2)	승하차사상																									
	타동점차상																									
	정무사상																									
	기타사상																									
	계																									

구 분	동 력 차			열 차 영 향						사상인원수			피 해													
	T C	M L	B 계	해열차	타열차	구	위	사	중	경	재	차량	관계	선로	관계	시설	관계	옹금	복구비	인명피해	전차선관계	기	타	제	비	고
사고부류 구분	사고종별																									
유	열 차 충돌																									
건	열 차 탈선																									
사	열 차 화재																									
고	사상사고																									
기	기타																									
계																										
부	차량충돌																									
금	차량탈선																									
내	차량고장																									
전	열차遲리																									
원	열차회행																									
인	차량일주																									
저	연철기고장																									
전	신호장치고장																									
원	신호장고장																									
인	차량선고장																									
저	승진고장																									
전	열차지연																									
원	이선지연																									
인	체색취급위반																									
저	신호취급위반																									
전	기타																									
원	부열차방해																									
인	선로지장																									
저	종전장애																									
전	보안장치장애																									
원	기타																									
인	차량재해																									
저	선로재해																									
전	송전재해																									
원	보안장치재해																									
인	기타																									
계	계																									
사	승하차사상																									
상	타동적사상																									
상	직무사상																									
상	기타사상																									
종	계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호(1977.3.16)의 권한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7.4.13

서울특별시장

가.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온하시장	강남구 서초동 151-2	674.2坪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결
정 및 일부변경하고 지적승인하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제41호

(19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 도시계획과와 광활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14

서울특별시

47-42 제 603 호

사

보 1977.4.14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	비고
신설	학교 (신일중, 고등학교)	도봉구 미아동 193의 9의 12필	88,556 (26,778평)	
"	" (중, 고등학교)	성동구 중곡동 산3의 18	23,736 (7,180평)	
"	"	강남구 거여동 산23의 14의 15필	33,389 (10,100평)	
기정	" (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산7의 2 부근	16,529 (5,000평)	
변경	" (단국중, 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산7의 2 의 3필	38,446 (11,630평)	추가 6,630평
기정	" (덕성여자대학)	도봉구 쌍문동 414-11 의 87필	145,278 (44,023평)	
변경	"	도봉구 쌍문동 414-11 의 107필	190,024 (57,482평)	학교 - 운동장 감 2,578평 추가 16,215평
신설	" (인평고등직업학교)	영등포구 오류동 산 43의 5	30,218 (9,150평)	

나.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44m	쌍문동 427의 20	쌍문동 427의 22	덕성여자대학
변경	"	"		"	19m	"	"	용지내 도로 폐지 및 변경
기정	"	"		"	175m	쌍문동 산 278의 4	쌍문동 439	
변경	"	"		"	175m	"	"	

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운동장 (수영장)	도봉구 쌍문동 429의 2의 2필	9,102m ² (2,578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1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6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철사)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철사) 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전략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3.15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 (공용의 철사) 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용의 철사 (중구청)	중구 예관동 83-10 외 99필지	6,072.4坪 (1,836.9평)	국유지 : 442.3평 시유지 : 1,394.6평
(신설)	공용의 철사 (국회의원회관)	영등포구 여의도동 1-440 외 13필지	13,249.6坪 (4,008평)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7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 호 (77.3.17)

증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한다.

1977.4.13

서울특별시장

변경 후				변경 전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보호구역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보호구역
18	관호동 이진승가	종로구 관호동 30의 1		1	관호동 이진승가		
19	운내동 김승현가	종로구 운내동 114의 33	종로구 운내동 114의 33호 (336.4평)	2	운내동 김승현가	종로구 운내동 114의 9	종로구 운내동 114의 9 (642평)

47-44 제 603 호

시 보

1977.4.14

변 경 후				변 경 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보호구역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보호구역
20	삼각동 조홍은행가	중구 삼각동 36의 2	중구 삼각동 36의 2 (167.30평)	3	중구 조홍은행가		중구 삼각동 32의 6
21	명륜동 김종국가	종로구 명륜동 3가 15의 3	종로구 명륜동 3가 15의 1, 2, 3호 (57평)	4	명륜동 김종국가	종로구 명륜동 3가 15의 1, 2호 일원 (일부시유지포함)	
22	가회동 백인제가	종로구 가회동 93의 1		5	가회동 백인제가		
23	옥인동 서용택가	종로구 옥인동 47의 33		6	옥인동 서용택가		

⑤ 서울특별시고시제 108호

서울특별시 1977년도 하천토석,
사력 채취로 고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1977년도 하천토석, 사력 채취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4.18

서울특별시장

1. 하천(한강)토석, 사력(원석)

1평당 채취료 134.10원

2. 열람: 각구출장소

공 고

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78호

환경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

- 서울특별시 신림, 신탕추가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경계획을 변경교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제55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 공고
한다.
- 환경계획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배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p>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p>
<p>1977.4.</p>	<p>2. 환자예정지 변경지정 조서는 도시 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란에 공한다.</p>
<p>서 울 특 별 시 장</p>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p>
<p>①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p>	<p>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통지할 것</p>
<p>②변경내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일부 토지</p>	<p>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p>
<p>③필지수 : 27 필지</p>	<p>로 적용한다.</p>
<p>④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p>	<p>1977. 4.</p>
<p>-----</p>	<p>서. 울. 특. 별. 시. 장</p>
<p>⑤서울특별시 공고제 80호</p>	<p>환지계획 변경지정내역</p>
<p>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p>	<p>가. 사업명 :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p>
<p>1. 서울특별시 공고제 61호 (77.3.</p>	<p>나. 변경지정면적 : 5,704평</p>
<p>26)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한 영동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이정</p>	<p>다. 변경지정위치 : 강남구 시초동</p>
<p>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에 의거</p>	<p>산 182의 2호 외 5필지</p>
<p>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조</p>	<p>-----</p>
<p>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p>	<p>⑥서울특별시 공고제 81호</p>
<p>-----</p>	<p>영동제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공고</p>
<p>서울특별시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p>	<p>-----</p>
<p>변경리지구에 대하여 건설부 공고</p>	<p>제 38호 (77.4.2)로 사업계획 변경</p>
<p>-----</p>	<p>-----</p>

47-46 제 603 호

시

보

1977.4.14

인가되었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제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점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서울특별시장

사업계획 변경 개요

1. 사업명 :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시행위치 : 강남구 청담동, 학동, 신사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암구정동, 도곡동, 서초동 각 일부

3. 시행면적 : 당초 13,012,137 평
(3,936,184 평)
변경 13,071,917 평
(3,954,237 평)

4. 시행기간 : 1971.8.21 ~ 1978.12.31

5. 유의사항

가. 사업실시기간중 사업질행상 필요한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가 사용되거나, 환지여정지 지정 및 정치공사기

완료되기 전 까지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상기 행위를 하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간음한다.

사령

◎ 1977.4.1

종로구 이상훈
지방행정주사보

경제기획원 전출을 명함.

◎ 1977.4.13

도시가스사업소 신무균
지방서기관

도시가스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동구 업주창
지방서기관

도시가스사업소장에 보함.

제 603 호

시

보

1977.4.14 47-47

강 남 구 서 기 판 성동구 시민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김동훈	◎ 1977.4.14 종합종말 처리사업소 지방기계기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처리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판 강남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김완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판 주사보시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
도로과 지방토목기사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	권경수	◎ 1977.4.15 종 구 지방행정사무관 부직을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